

# [전문가 視覺] 공공입찰제도, 가격 영향력 요소 더 줄여야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2.03.28 07:00



공공계약의 기본적 법률인 국가계약법 제7조는 우리나라 공공계약 체결의 방식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임을 밝히고 있다. 시설공사분야에서 경쟁입찰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낙찰자선정 평가제도의 골격은 크게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이행계획 등 기술적 요소와 입찰 참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시한 일종의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조달대상물에 따라 이러한 양대 요소의 유기적 조화를 통한 공급자 선택이 합리적 공공조달제도 운용에 중요 과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계약제도의 실체는 앞서 언급한 합리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건수로는 많은 공공시설공사(국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계약의 경우 300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도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점수의 합계가 일정 점수 이상일 때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이론적 내용이다. 하지만 실상은 계약이행능력의 변별력이 상실된 채, 특정 가격 맞추기 여부가 관건이 되는 ‘운찰제(運札制)’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건설업 부문의 페이퍼컴퍼니가 존속하는데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글로벌 경쟁력 향상,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발생하는 덤핑투찰과 이로 인한 잦은 계약 변경, 부실시공의 해소 등을 위해 2016년 도입돼 300억원 이상의 대형 시설공사(국가계약의 경우 100억~300억원 간이형 종심제 대상)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도 기술 능력 등 비가격 요소의 변별력이 적은 가운데 극히 작은 제시가격 격차에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공공입찰제도는 전반적으로 가격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주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입찰제도가 비교적 낮은 가액의 사업에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경쟁이 진행되지만,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통해 가격과 기술적 능력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적격심사제도 영역을 최저가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의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조차 적정대가에 많이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공공시장 참여자들을 무한가격경쟁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먼저 다소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 적용 영역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낙찰을 받은 후, 불법적 재하도급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통해 공공시장 경쟁여건을 크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다소 계약금액이 높은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검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 고려가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영역은 국제기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국내용 입찰제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도에서 가격의 영향력 축소를 꾀하고, 공사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며, 입찰참여자가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산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인하는 시도와 함께 기술경쟁력 제고에 대응해 적정 대가를 인정하려는 재정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